

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(김건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08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21.

발 의 자 : 김 건 · 김기웅 · 안철수
최보윤 · 박충권 · 윤재옥
김태호 · 이성권 · 강선영
이소희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우리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와 대규모 인프라 · 자원개발 프로젝트 참여가 활발해지면서, 해외진출기업의 경제활동을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.

그런데 주재국의 법령 · 제도 변경 등과 같이 경제 외적 변수가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, 주재국 정부와의 공식 소통 창구이자 현지 정보망을 갖춘 재외공관의 교섭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외교부장관 및 재외공관의 장이 해외진출기업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, 재외공관이 주재국의 경제 · 산업 동향 및 법령 변경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기업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, 우리 기업의 해외 경제활동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이 법은 재외공관이 주재국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해외 경제활동 촉진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- 나. 외교부장관이 해외진출기업 지원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, 재외공관의 장은 특정 기업에 부당한 특혜가 부여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등 지원의 원칙을 규정함(안 제4조).
- 다. 해외진출기업이 주재국의 경제·산업 동향 및 법령 변경 사항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을 재외공관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, 재외공관은 해당 정보를 수집·분석하여 제공하도록 함(안 제5조).
- 라. 외교부장관은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지원 시책의 수립·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진출기업의 현황 및 애로사항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조).
- 마. 재외공관의 장과 그 소속 직원 등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해외진출기업의 영업비밀 등을 누설하는 것을 금지함(안 제6조).

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재외공관이 그 관할 주재국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해외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해외진출기업”이란 「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.

2. “해외진출 활동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.

가. 「대외무역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

나. 「외국환거래법」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

다. 해외에서 시행되는 건설·엔지니어링·인프라·자원개발 등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활동

라.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

3. “재외공관”이란 「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」 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 재외공관(재외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영사 사무

를 수행하는 사무소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분관 또는 출장소를 포함하고, 영사 사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영사관할구역이 없는 재외공관은 제외한다)을 말한다.

4. “주재국”이란 재외공관이 설치된 국가(해당 재외공관의 겸임국 및 관할지역을 포함한다)를 말한다.

제3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해외진출기업 지원의 원칙) ① 외교부장관은 해외진출기업 지원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과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외진출기업 지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③ 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시행할 때 특정 기업 또는 개인에게 부당한 특혜가 부여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, 지원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.

제5조(지원의 신청 및 정보 제공 등) ① 해외진출기업은 재외공관에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재외공관은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수집·분석하여 제공할 수 있다.

1. 주재국의 경제·산업 동향 및 투자 환경

2. 주재국의 법령·제도·행정절차의 변경 사항

3. 그 밖에 해외진출기업의 해외진출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

② 재외공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③ 재외공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거절하여야 한다.

1. 주재국과의 외교관계 또는 국가의 안전보장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

2. 지원 신청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

3. 그 밖에 정보의 제공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④ 재외공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정보의 제공을 신청한 해외진출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.

⑤ 지원의 신청 방법·절차 및 구비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6조(비밀누설 금지) 재외공관의 장과 그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해외진출기업의 영업비밀(「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

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, 해외진출 활동에 관한 정보, 그 밖에 비밀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7조(실태조사) ① 외교부장관은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지원 시책의 수립·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진출기업의 현황 및 애로사항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관련 기관·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,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관련 기관·법인 또는 단체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·절차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